



##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2.] [고용노동부령  
제266호, 2019. 11. 12.,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한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주 등이 개명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의 전산망 입력·관리(안 제3조제3항)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작성·관리해야 하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음.

나. 파견사업주 등의 개명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등의 변경 신청(안 제3조의2 신설)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함), 법인의 대표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1. 13.] [대통령령 제 30206호, 2019. 11. 12.,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을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35호, 2019. 8.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신산업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및 신산업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중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신산업 및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신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으로 정하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 정함.

나. 신산업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의2 신설)

신산업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사업재편을 통하여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이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다. 산업용지 등 매각 시 양도차익의 사용 제한(제20조의2 신설)

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70 이상을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6.] [대법원규칙 제 2865호, 2019. 11. 6.,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법률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규칙의 일부 용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상 정의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
- 현재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등록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법률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 이를 반영함(제1조)

- 인증기관·등록기관 수행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삭제함(제4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제5조제3항 신설, 제8조제5호 삭제, 제8조제3항 신설)
- 규칙의 일부 용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상 정의규정에 맞추어 정비함(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하기에 관련 규정을 추가함(제11조 신설)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6.] [대법원규칙 제 2862호, 2019. 11. 6.,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 해외 유학이나 취업, 국제혼인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부칙과 서류

의 폐기절차를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2. 주요내용

-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록사항, 작성방법 등을 규정함(제21조의3 신설)
-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제28조제4항제5호 및 제8호, 제37조제1항제1호)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비치하는 부책과 서류의 보존기간 기산점 누락을 보완함(제84조)
-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부책과 서류의 폐기절차를 각 주체별로 명확히 규정함(제85조)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폐기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시·읍·면의 장의 폐기절차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폐기절차에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제90조)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 30182호, 2019. 11. 5.,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보충역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 외교부장관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여권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발급하고 있지 않는 사진전사식 여행증명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 30184호, 2019. 11. 5.,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외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직업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고기한의 개시 시점을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때에서 보호관찰의 시작 시점인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로 정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 30183호, 2019. 11. 5.,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인 “간병”으로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비의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개정해 피해자의 신체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적절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사망

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피해자 본인의 4분의 1을 지급하던 것을, 피해자가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해자 본인의 2분의 1로 규정해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차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 30200호, 2019. 11. 5.,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을 직류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한편,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하는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무원임용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 30191호, 2019. 11. 5.,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교류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요건 강화(제16조제1항제7호 본문 및 부칙 제1조 단서)

(1) 현재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중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부처

로 전보 시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음.

(2)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함.

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제32조제1항제2호)

1) 현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 또는 성폭력 등 성적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직무행태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위 사례와 비교하여 그 폐해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소극행정이나 음주 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함.

다.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승진임용 제도 보완

(1) 특별승진임용 대상 추가(제35조의 2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5항 신설)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특히 국무총리 표창 이상에 해당하는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2) 근속승진 기간 단축 및 근속승진 비율 확대(제35조의4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속승진 임용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함.

라. 인사교류 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 복귀 보장(제4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부처 간 협업과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대상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그 교류 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1.]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2019. 11. 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무를 등록사업자 등의 분양대행자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대행자만 대행할 수 있는 업무로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업무 등을 정하고,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로 하여금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을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5일 이후에 하던 것을 10일 이후에 하도록 하여 공급



대상자가 청약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때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등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 30178호, 2019. 10. 29.,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적용 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4. 30.] [대통령령 제 30176호, 2019. 10. 29.,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퇴직연금사



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 [고용노동부령 제 265호, 2019. 10. 29., 전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중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일자리 증

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6412호, 2019. 4. 30.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인용하는 「고용정책 기본법」의 규정 순서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